<노사문화 우수기업·대상 신청 안내문>

1 신청자격

○ (우수기업) 사업 개시일로부터 **1년이 경과**되고,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(공고일 기준)

-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**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**에 한함

○ (大 賞) **'24~'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**으로 선정된 사업장

(결격사유)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

① 최근 **3년 이내**에 **불법 노사분규**가 발생한 사업장

② 노사문화 우수기업·대상 **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**

③ 최근 **3년 이내 1회 이상**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**명단이 공표된 사업장**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

④ 최근 **3년간**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**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**되거나,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**체불자료가 제공**된 사업장

⑤ **장애인 고용이 저조**하여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라 최근 **2회 연속 명단이 공표**된 사업장

⑥ 「**공정거래관련법**」 **위반**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,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

⑦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 등에 따라 **고액·상습 체납** 등으로 **명단이 공개** 중인 사업장

⑧ 최근 **3년간 부당노동행위**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)로 **기소**된 사업장

⑨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**사회적 물의를 야기**하거나 **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**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

2 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

- (우수기업) 2026. 3. 10.(화) ~ 4. 15.(수) 18:00시까지

- (大　　賞) 2026. 7. 16.(목) ~ 8. 18.(화) 18:00시까지

○ 신청서류

번호	구비서류	서류양식	작성방법
1	지원신청서	붙임1	온라인 작성 및 서명된 스캔본 제출
2	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	붙임2	한글 및 PDF 파일로 제출 (증빙자료 포함 A4 50페이지 이내)
3	추진실적 증빙자료	-	PDF 파일로 제출
4	납세증명서	-	국세청 발급 후, 스캔본 제출
5	사업자등록증 사본	-	스캔본 제출

☞ **고용노동부부천지청 홈페이지 게재 <붙임1> 신청서 및 <붙임2>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 양식 참조**

○ 신청방법

- **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**(www.nosa.or.kr)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

회원가입		서류작성		온라인 신청		서류 업로드
홈페이지⇒ 회원가입⇒ 로그인	▶	재단소식⇒사업공고 ⇒ 해당사업 신청공고⇒ 첨부양식 다운로드	▶	주요사업⇒사업일정⇒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⇒기업인증 후 신청서 작성	▶	구비서류를 온라인 신청서 하단에 업로드

- 반드시 **노.사 대표자 공동명의**로 신청

  *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

- 중소기업.대기업*.공공기관**을 구분하여 신청

  *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,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

〈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〉

- △ 제조업: 500명 이하
- △ 광업, 건설업, 운수·창고업, 정보통신업, 보건업 등: 300명 이하
- △ 도매·소매업, 숙박·음식점업, 금융·보험업 등: 200명 이하
- △ 그 밖의 업종: 100명 이하

  * 사업장(공장 등)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업 전체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구분

** 공공기관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 중「지방공기업법」의 적용을 받는 기관

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

지 원 내 용	노사문화 대 상	노사문화 우수기업	담당기관
< 행정상 우대 >			
▪ 정부포상	대통령·국무총리상, 고용노동부장관상	인증서·인증패	고용노동부
▪ 정기근로감독	면 제 (최장 5년)	면 제 (최장 5년)	
▪ 노동절 정부포상 가점	2.5점 가점	2.5점 가점	
▪ 상품용기 등에 우수기업 표식	우수기업 표식	우수기업 표식	
▪ 소개책자 제작 및 유관기관 비치	제작·송부	제작·송부	
▪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우대	0.5점 가점	0.5점 가점	국 방 부 (재정회계담당관)
▪ 계약 적격심사시 우대	0.1점 가점	0.1점 가점	방위사업청 (계약제도발전과)
▪ 세무조사 유예 (모범납세자에 한함)	1년(2년: 국무총리상 이상)		국 세 청 (납세자보호담당관)
▪ 납세담보 제공 면제 (모범납세자에 한함)	2년(3년: 국무총리상 이상)		
▪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	2점 가점	2점 가점	중소벤처기업부 (인력정책과)
▪ 현역인원배정시 우대	2점 가점	2점 가점	
▪ 클린사업장 인증시 우대	최우선 선정	2점 가점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(지원계획부)
▪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	5점 가점		
< 금융상 우대 >			
▪ 대출금리	0.1% 우 대	0.1% 우 대	농협
▪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	우 대	우 대	신한, 하나 국민
▪ 신용보증시 보증한도	우 대	우 대	신용보증기금

※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 내용 중 일부내용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